

의안번호	2205199
의 퇴 인	정혜경 의원
회 답 일	2024.11.5.
추계번호	24B47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제1항) 10. “동일가치노동”이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 하에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술·노동강도·작업조건 등이 동일한 경우,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의 동일 업무의 수행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의무규정
3	안 제6조의2(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보장)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사용자는 동일한 업종 또는 산업에서 산별교섭의 결과가 있으면,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 할 수 없음(제2항)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을 받은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 할 수 있음. 다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제3항)	재량규정
		제3항에 따른 시정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제4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 미대상 - 개정안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보장’의 원칙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한 정의 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지 않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6조(균등한 처우)	—	• 미대상 – 개정안은 균등한 처우의 내용에 고용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지 않음
3	안 제6조의2(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보장)	×	• 미대상(제1항~제2항) –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첨부(제3항~제5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 사유

-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균등한 처우의 내용에 고용형태를 포함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시정 신청으로 인해 노동위원회의 인건비 및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래에 발생할 시정 신청물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어려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노동위원회의 시정 신청 수와 심리로 인한 행정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소요 비용의

1)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